

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

성 북 구
(어르신·장애인복지과)

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의안 번호	58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4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·교육·직업·의료재활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(2026.6.30.)에 따라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,

나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 따라 성북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2(승인 및 동의)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개관일	비고(現 위탁기관)
성북장애인 복지관	성북구 화랑로 130 (하월곡동)	대지 856㎡ 건물 2,475㎡ (지하1층, 지상5층)	2007.07.01.	사회복지법인 승가원 (위탁기간 2021.7.1.~2026.6.30.)

나. 위탁기간 : 2026. 7. 1. ~ 2031. 6. 30. (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)

다. 위탁방법 : 종합성과평가 적정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
재계약 적격성 심의·의결

라.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
- 성북장애인복지관 관리·운영에 따른 사무 전반
-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시설관리 및 필요시 공간구성
- 운영사업의 행정·회계업무 처리, 운영관리와 성과·평가관리
-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·관리
- 그 밖의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3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-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5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관라운영의 위탁)

-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 1.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
 2.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
 3. 위탁기간
 4.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
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야 하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